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고 제 2026 – 6호

서울중앙지방공소청 2026년도 제1회 공무직근로자(사무원)(장애인 구분모집 포함)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2026년 제1회 공무직근로자(사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 인원	담당 업무	근무예정지
공무직근로자 (사무원)	10명 (장애인 구분모집 2명 포함)	행정 및 사무 보조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 서초구)

※ 상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1) 참조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임용시험령, 공소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공소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규정, 공소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3 응시자격 요건(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관련 세부 규정은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붙임2)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만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 공소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43조에 따른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이 가능한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한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한 사람 중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
- 직무 관련 자격증 요건(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한 자)

▸ 워드프로세서(종전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위 자격증 복수 소지 시, 취득일이 빠른 자격증을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으로 하고 나머지 자격증은 '우대요건 자격증'으로 함

☞ 위 각 항목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4 우대요건 및 가점 요건

가.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직무분야 관련 근무경력 ○ 직무분야 관련 직무성과(수상실적) ○ 사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직무분야: 행정·사무 업무

[우대요건 고려사항]

○ **직무분야 관련 근무경력**(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관련 경력에 대해 연차별 차등 배점)

- **①업체(기관)명②근무기간③담당업무④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가 모두 명시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주 근무시간 기재 시 정확한 시간으로 기재 요함(예: 주 40시간)**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됩니다.**
- **경력(재직)증명서 양식에 ①~④가 나타나지 않거나, 시스템 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할 경우 <별지 서식 제7호>를 제출하여 증빙**
- 특히 담당 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별도의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업무분장내역, 경력증명서(별지서식 제7호) 등)을 별도 첨부하여야 함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일부만 기재한 경우, 내용 불명확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증명서 발급 담당자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①폐업사실증명서, ②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소득금액증명서, ④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모두 제출하여 관련 경력이 입증되어야 우대 가능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외국어로 된 서류나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미제출 시 해당 경력 불인정)
- 대학 조교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경력에서 제외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직무분야 관련 직무성과(수상실적)(건별·등급별 차등 배점)**

: 관련분야 표창·상훈 수상실적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 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사무관련 자격증 소지자(건별 배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중 응시자격 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을 제외한 것(예를 들어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응시자격 요건으로 제출한 경우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다면 우대 대상)

나. 가점 요건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개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서류전형 시 만점의 10% 또는 5% 가산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 불가(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가 산 요 건

【취업지원 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일반전형) 응시인원이 24명 이하인 경우 소극적 전형, 25명 이상인 경우 적극적 전형 실시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25명 선발
- (장애인특별전형) 응시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소극적 전형, 7명 이상인 경우 적극적 전형 실시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6명 선발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평정요소 】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④ 근무경력
⑤ 직무성과 ⑥ 자격증 ⑦ 가점 요건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면접위원이 4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평정요소 】

① 소통·공감(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사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합격자 순위결정 기준】

①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자,

②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로 순위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예비합격자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내에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 중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순번 부여

【불합격 기준】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의 평정

②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의 평정

6 시험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6. 11. 19.(목) ~ 11. 30.(월)	'26. 11. 19.(목) ~ 11. 30.(월)	'26. 12. 16.(수)	'26. 12. 18.(금)	'26. 12. 21.(월)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일정·장소, 최종합격자 명단은 나라일터,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홈페이지에 공고(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중도 퇴사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

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6. 11. 19.(목) ~ 11. 30.(월)
-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방문제출, 택배, 퀵서비스 불가)**
- 접수처: (우) 06594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총무과 1422호 채용담당

※ 등기우편 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근로자(사무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음)

※ 12. 11.(금)까지 응시번호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지원기관으로 문의, 응시번호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

구분	명칭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응시원서 1부	ㅇ 별지서식 제1호
	채용시험 이력서 1부	ㅇ 별지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서식 제3호
	직무수행 계획서 1부	ㅇ 별지서식 제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반드시 자필 서명)**	ㅇ 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반드시 자필 서명)**	ㅇ 별지서식 제6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반드시 자필 서명)**	ㅇ 별지서식 제8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반드시 자필 서명)**	ㅇ 별지서식 제9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반드시 자필 서명)**	ㅇ 별지서식 제10호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문 이후 발급분,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사본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별지서식 제7호
	수상 실적(상장 사본 등 증빙자료) 1부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1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다. 유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장에서 경력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 기재 내용이 증빙자료와 상이한 경우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7. 1. 4. ~ 1. 29.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 근무조건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26. 1. 초 예정)로부터 무기계약(정년 만 60세)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보수 : 월 2,000,000원 상당(근무연차에 따라 차등 지급)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장근로수당 별도 지급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9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과 담당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무효·취소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임용시험령」등 채용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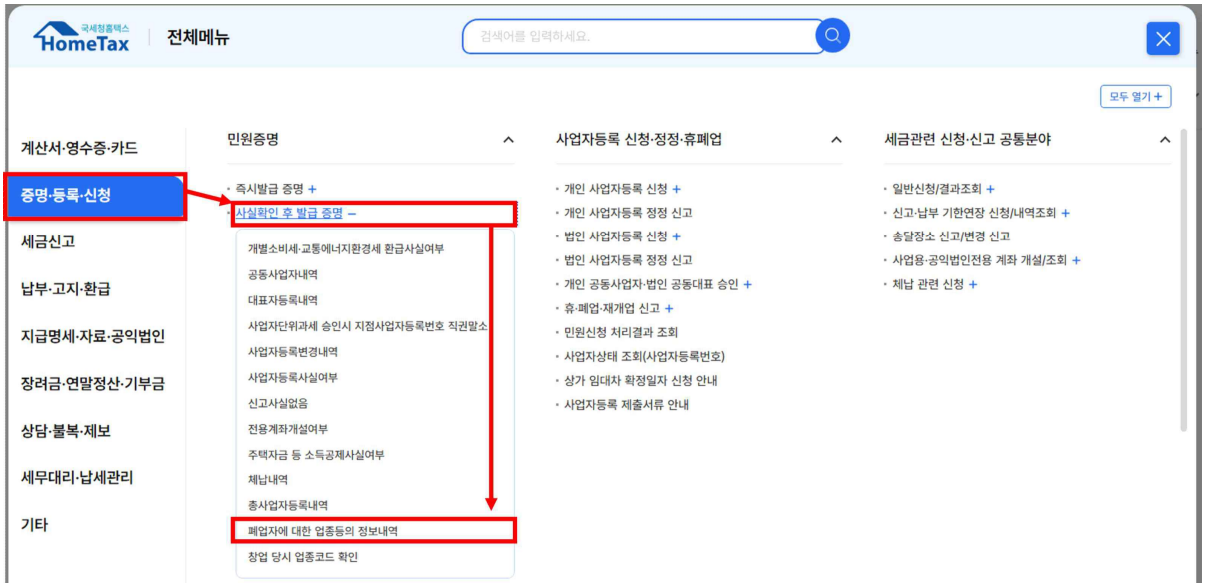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총무과(☎ 02-530-4772,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근무예정지
공무직근로자 (사무원)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 서초구)

주요 업무	○ 민원응대, 문서접수, 전산입력 ○ 자료 정리 등 행정사무 ○ 검사실 업무 보조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필요 역량	○ 공정성, 청렴성, 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 ○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필요 지식	○ 공소청 행정 업무 전반의 이해 ○ 검사실 업무 보조에 따른 형사소송법,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등 법령에 대한 이해

응시자격요건	직무분야: 행정·사무	
	자격증	○ 워드프로세서(종전 1급)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위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 시 지원 가능
	학위·경력	해당없음
우대요건		○ 직무분야 관련 근무경력 ○ 직무분야 관련 직무성과(수상실적) ○ 사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직무분야 : 행정·사무 업무**
가점 요건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붙임 2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중략>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응시번호	성명	응시직위
기재불요		공무직근로자(사무원)

□ 제출란에 "O" 표시 후 아래 순서대로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목 록	제출
▸ 응시원서(※필수)	
▸ 채용시험 이력서(※필수)	
▸ 자기소개서(※필수)	
▸ 직무수행 계획서(※필수)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필수)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필수)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필수)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필수)	
▸ 주민등록초본(공고문 이후 발급분)(※필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사본(※필수)	
▸ 장애인 증명서 등 증빙서류(해당자)	
▸ 근무경력 증빙자료(재직·경력증명서)(해당자)	
▸ 수상실적 증빙자료(해당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작성요령

1. 반드시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컴퓨터로 작성하여 제출
2.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하거나 표기한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3.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반드시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작 성 요 령≫

① **응시번호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② 주소·휴대전화(연락처)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③ 응시자격 요건: 해당하는 것에 ✓ 표시

④ 우대사항 및 가점 사항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우대사항은 해당하는 것을 빠짐없이 모두 체크

※ 근무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최근 경력부터 기재

※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 **근무기간 :** 시작일(연, 월, 일) ~ 종료일(연, 월, 일)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 :** (민간) 과장, 팀장, 대리 등의 직위 / (공무원) 7급, 전문경력관 나군 등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 :** 전임 / 비전임, **주당 근무시간 필수기재(35시간, 40시간 등)**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담당업무 :** 실제로 수행한 업무 기재

<별지서식 제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도 제1회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시행 공무직근로자(사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 (사무원)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예( ) 아니오( )
주 소	(㉮)		
전자우편			
휴대전화			

㊞

응 시 표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 (사무원)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			

<별지서식 제2호>

채용시험 이력서

<table>
<tr><td colspan="6">1. 공통사항</td></tr>
<tr><td>응시분야</td><td colspan="3">공무직(사무원) [□일반전형 / □장애인특별전형]</td><td>응시번호</td><td>※ 담당자 기재</td></tr>
<tr><td>성명</td><td colspan="2"></td><td>생일</td><td colspan="2">* 생년은 미기재</td></tr>
<tr><td rowspan="2">연락처</td><td colspan="2">(본인휴대폰)</td><td>전자우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비상연락처)</td><td colspan="3">(본인과의 관계)</td></tr>
<tr><td>주소</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2. 응시자격 요건(필수 작성)</td></tr>
<tr><td rowspan="2">자격증</td><td>자격명</td><td>자격증 취득일</td><td colspan="3">자격 검정기관</td></tr>
<tr><td>□ 워드프로세서(종전1급) 또는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td><td></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6">3. 우대사항(해당자만 작성/증빙서류 제출) ※ 필요시 칸 추가/삭제 가능</td></tr>
<tr><td>해당여부</td><td colspan="3">□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 <사무관련 자격증 소지자></td><td colspan="2">□ <직무분야와 관련된 수상실적></td></tr>
<tr><td rowspan="2">근무경력</td><td>근무기관
(부서)</td><td>근무기간</td><td>직위/
직급</td><td>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td><td>담당업무</td></tr>
<tr><td></td><td>'2x. x. x. ~ '2x. x. x.
(0년0월0일)</td><td>사원</td><td>전임 / 비전임
(주당 00시간)</td><td></td></tr>
<tr><td rowspan="2">수상실적</td><td>수상년월일</td><td>포상명</td><td colspan="2">내용</td><td>수여기관(시행청)</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2">사무관련
자격증</td><td colspan="2">자격명</td><td>자격증 취득일</td><td colspan="2">자격 검정기관</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4. 가점 사항(해당자만 작성/증빙서류 제출)</td></tr>
<tr><td>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td><td colspan="2">□ 취업지원 대상자
(상세명:)</td><td>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td><td colspan="2">□ 5% □ 10%</td></tr>
<tr><td>보훈번호</td><td colspan="2"></td><td>유공자와의 관계</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하여 작성
※ 글자크기, 장평, 셀 추가/삭제 등을 조절하여 가급적 1장으로 작성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td></tr>
</table>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제출

1.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2. A4용지 1매 이내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
3. 휴먼명조체 13 포인트, 줄 간격 170%로 작성

2026. . . 작성자 : (서명)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 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제출

1. 담당예정 업무에 대해 아는 대로 기재하고, 향후 응시직종에 대한 직무수행 계획을 기재
2. 휴먼명조체 13 포인트, 보통, 줄 간격 170%로 작성

□ 직무 관련 근무경력 및 성과(해당자에 한함)

【작성요령】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제출

1. 담당예정 업무와 연관된 응시자의 경력 및 성과를 A4용지 1매 내외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
2. 휴먼명조체 13 포인트, 줄 간격 170%로 작성

(예시)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2012. 1. 1. ~ 2023. 12. 31. 상근직 근무

– 담당 업무와 연관된 경력 및 성과 기재

–

□ 직무 관련 수상실적(해당자에 한함)

【작성요령】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제출

1. 직무 관련 수상 내역 및 공적을 A4용지 1매 내외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
2. 휴먼명조체 13 포인트, 줄 간격 170%로 작성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함께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예시)

내용	수상년월일	수여기관
표 삭제 가능	*20XX. X. X*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근무 당시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2026. 12. 31.

– 직무 관련 수상 내역 및 공적 기재

–

□ 기타 실적, 능력 등

【작성요령】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제출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 및 능력 등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히 기재

2026. . . 작성자 : (서명)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시행하는 2026년 제1회 공무직근로자(사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경력, 자격증,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직 근로자(사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직근로자(사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직근로자(사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학력·경력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 증명, 자격증·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 시 공무직 근로자(사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직 근로자(사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직 근로자(사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 시 공무직 근로자(사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직 근로자(사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직 근로자(사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및 수사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응시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자격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17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직 근로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직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 시 공무직 근로자(사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①담당업무	②근무형태 (주근무시간)	③비고
	부터	까지					
	(예시) '20.6.30.	'22.7.1.	서울중앙 지방공소청 (총무과)	공무직 근로자 (사무원)	행정 및 사무 업무	전임 주 40시간	

제외 기간	제외 기간	제외사유
	' 00. 00. 00. ~ ' 00. 00. 00.	ex) 휴직 등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 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④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⑤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근무형태 : 주 근무시간 기재
③ 비고 : 기타 참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④ 발급자 : 발급 업무 담당자 직접 기재 **(발급신청자×)**
⑤ 확인자 : 인사 부서 담당자 직접 기재 (발급자의 직속상급자 혹은 소속부서 팀장 및 과장 등)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 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위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별지서식 제8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무직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소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응시자: (서명)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9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별지서식 제10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채용 결격사유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정보
2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연 락 처 :